2024년 민관협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물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2024년 민관협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4. 3. 27.(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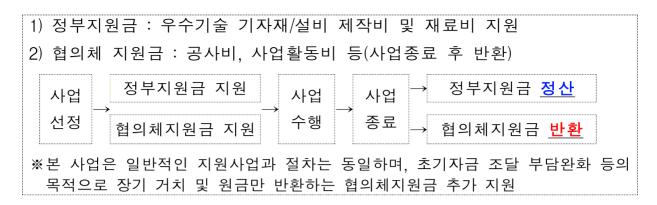
2024년 2월 26일 한국물산업협의회장

1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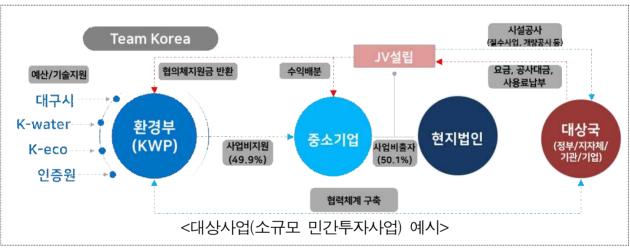
- □ 물기업-공공부문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 물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여 실질적 수출성과 달성 및 후속사업 수주기반 마련
- □ 성장성과 파급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비, 국제협력, 기술·행정분야, 해외현지조사 등 사업추진 제반활동 지원

2 공고 개요

- □ (사 업 명) 2024년 민관협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 □ (지원대상)「물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 □ (지원규모) 당해 총사업비 내에서 2개 내외 사업 지원
 - * '24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160백만원), 협의체 지원금(520백만원)
 - ⇒ 예시) 2개 기업 선정시 기업당 정부지원금(80백만원). 협의체 지원금(260백만원)



-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사업 종료시까지
 - * 단,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 2024년 12월(정산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대상사업) 물산업 분야 해외 공사(신규설치·개량), 운영(유지관리) 등 민간투자형 수익사업으로 해외 실적 및 매출 확보가 가능한 사업*
 - * (사업 예시) 기존 추진사업(별첨 1), 신규 사업모델(별첨 2) 참고



- * 공고일 기준, 제안사업이 계약, 착공, 대금수급 등 기 수행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
- □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 물기업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물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사업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운영규정 제10조 참고)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3. 2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제출서류) 기업명.zip (압축파일로 제출)

1. 사업계획서 기업명

-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_기업명 8.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_기업명
- 3. 참여의사 확인서 기업명
-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명
- 5. 표준재무제표('21~'23년)_기업명
- 6. 사업자등록증 기업명

- 7.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명
- 9. 중소기업확인서 기업명
- 10.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기업명
- 11. 기타 가점 및 증빙서류 기업명
- □ 접수방법 : 이메일(kwp@kwp.or.kr), (문의) 02-2634-6782
- □ 유의사항
 - · 선정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ㆍ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 이후 자료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ㆍ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간주함
 - · 공고문 및 운영규정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 물산업협의회 해석에 따름

사업 추진일정

- □ 공고 및 접수 : 2024. 2. 26(월) ~ 3. 27(수) 18시
- □ 사전검토 : 2024. 3. 28(목) ~ 4. 4(목)
- □ 발표평가 : 2024. 4. 5(금)
 -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 발표 15분, 심의위원 질의응답 15분 총 30분 예정

<발표평가 제출 자료>

- 발표용 PT 자료 : 4.2(화)까지 협의회 사업담당자 이메일(kwp@kwp.or.kr) 제출
- 발표자료 인쇄물 : 발표평가 당일(4.5) 발표자료 사본 10부 평가장에서 제출
- □ 결과통보 : 2024. 4. 11(목)
-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의 : 2024. 4. 12(금) ~
- □ 협약체결 : 2024. 4월 중순(예정)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함

참고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0&A

- 1 '협의체 지원금'은 어떤 성격의 지원금인지?
- □ '협의체'는 물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분야 공공기관과 지자체로 구성된 '물산업 민관협력 해외동반진출 협의체*'를 의미합니다.
 - *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물산업협의회
- □ '협의체 지원금'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이 분담·조성한 예산으로, 초기사업 자금 등으로 기업에 지원하고 공사종료 후 <u>다시 회수(반환)</u>하는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 □ '협의체 지원금'은 ①물기업 초기 사업비 조달부담 완화, ②공공예산 투입에 따른 물기업의 해외 현지 신인도 제고, ③정부 지원금의 지원 효과 제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지워금입니다.
 - 2 '협의체 지원금'을 회수(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 회수된 '협의체 지원금'은 다음 신규사업에 참여하는 물기업에 당해 조성된 예산과 함께 지원되게 됩니다. '지원-회수-신규지원-회수…지원'의 체계를 통해 더 많은 물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3 사업비 증액(원가율 100% 초과 등)시 '협의체 지원금'의 감면이 가능한지?
- □ 사업진행 중 발생가능한 다양한 사유로 인해 사업비(민간부담금)가 증가되는 경우라도 '협의체 지원금' 회수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 단,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협의체 지원금 반환일정'은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협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신청 가능한 사업의 범위 및 사업모델은?
- □ 본 지원사업에 신청가능한 사업범위는 해외에서 수행(예정)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분야 전체입니다.
- □ 또한, 기자재 설치공사, 시설 개량공사, 수익공유형 사업, 민간투자형 사업 등신청 물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 적용하여 직접적으로 해외 실적 및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별첨 사업모델 설명자료 참고)
- □ 단, 단순 견적요청 접수, 입찰 참가 예정 등 사업수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및 계약, 공사착공, 대금수급 등 사업이 기 진행중인 경우 등사업운영지침 제10조(사업참여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5 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만 해당되는지?
- □ 본 지원사업은 사업비(정부지원금, 협의체지원금)외에 기술, 행정분야 등물기업의 해외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합니다. 사업계획서 양식(5.기타사항) 에 따라 신청기업에서 협조·지원 요청사항에 기재한 사항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 □ 단, 물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 해야하는 단위 과업이나 단순 용역 등 비용투입이 수반되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 6 본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
- □ 전체 사업기간은 물기업의 해외사업기간 및 협의체 지원금의 반환기간을 합쳐 최종 협의체 지원금이 반환완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지원기간 종료 기간에 따라 사업수행 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